

서울문백초등학교 기간제교원(특수) 채용계획 5차 공고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관내 서울문백초등학교 기간제교원(특수) 5차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1. 채용

가. 채용권자: 서울문백초등학교장

나. 채용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등 상세내역

학교명	학년/교과/담당	채용기간	채용인원(명)
서울문백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	2026. 9. 1. ~ 2027. 2. 28.	1

라.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 채용기간 시작일까지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도 응시 가능하나 채용일까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채용 취소

2. 기간제교원의 개념

○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

3. 근무 조건

가. 신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 기간제교원의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함(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 ※ 신분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단, 「기간제교원 봉급에 관한 예규」 제3조에 따라 정교사(1급) 등의
자격변동 시 재산정

라. 근무시간: 전일제 근무

마.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 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시 자격 및 채용의 제한(계약해지 사유 포함)¹⁾

가. 응시 자격: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하게 학기말까지 적용) 미 해당자. 다만, 2026학년도 한시적으로 1차공고 모집시부터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 가능하며 2차공고 모집시부터는 69세까지 임용 가능(단, 계약기간은 해당 학기 내로 한정함)

※ 2026학년도 채용시기(학기)별 연령 산정 기준

연령①	학기	생년월일	연령②	학기	생년월일
65세	1학기	1961. 3. 1. ~	69세	1학기	1957. 3. 1. ~
	2학기	1961. 9. 1. ~		2학기	1957. 9. 1. ~

나. 자격: **특수학교(유치원, 초등, 중등) 정교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 3차 이상 공고로 학교급 상치(유 ↔ 초 ↔ 중) 허용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다. 채용의 제한 7), 8)은 2026학년도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주요 개정사항임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 5)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7)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특수학급 근무 예정 기간제교원에 한함)
- 8) 퇴직일로부터 2년(단, 초등학교원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명예퇴직 교원(기산점은 기간제 교원 채용일자)
 - ※ 단, 2차공고 모집시부터는 퇴직일자와 무관하게 명예퇴직 교원 응시(채용) 가능
 - ※ 정년퇴직 교원은 퇴직일자와 무관하게 1차 공고부터 응시(채용) 가능
- 9)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 10)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11)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라. 계약의 해지 사유

-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 3)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 4)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단, 혈중 알콜 농도 0.03%이상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는 해지 가능)
- 5)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해당 교원이 소속 유치원으로 조기 복직·복귀하게 된 때, 또는 교원 신규임용자나 복직자 등이 해당 학교로 전보된 때
- 6) 특별한 이유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 7) 채용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나 근무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
- 8)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예, 성범죄로 수사 중인 경우)
- 9) 채용 전 성 관련 비위사실이 드러나거나 근무과정에서 성 비위 관련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
- 10) 기타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심사 일정

가. 1차 심사(서류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서울문교초등학교에서 합격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나. 2차 심사(면접심사 및 수업실연)

- 면접심사 및 수업실연 일정, 수업실연 준비사항 등: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함께 안내
- 2차 심사 합격자(최종합격자): 서울문교초등학교에서 개별 통보(예정)

다. 최종합격자 (가)호봉확정 및 임용서류 징구 업무를 남부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지원 예정

6. 응시원서 접수

가. 기간: 2026. 7. 27.(월) ~ 7. 30.(목) 09:00까지

나. 제출방법: 남부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과 전자우편(이메일)

다. 전자우편 주소: nbss06@sen.go.kr

라. 원서접수용 교육지원청 업무메일(센메일) 특성상 수신메일을 확인하고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여도 응시자의 발신메일에 '확인안함'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후 접수확인 안내 SMS 송부 예정

바. 가산점 적용

- 1) 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하여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2) 가산점은 채용예정 기관·직종별로 4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 가능합니다.(취업지원대상자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직종별 채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따라서 본 공고에 따른 채용에는 가산점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관련 법에 따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므로 해당자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발급, 국가유공자 증명서 등으로 갈음 불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7.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일
지원자 공통(필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 [붙임1]	원서접수 기간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보훈청, 보훈지청 발급)	
서울교육일자리포털 內 시간강사 인력풀 등재 희망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지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2] ○ 시간강사 채용 서약서 [붙임3]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최종합격자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 최종학력증명서	
		응시 학교 또는

구분	제출서류	제출일
	○ 경력증명서 ○ 채용신체검사서(또는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 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필요 시)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조회 동의서 (특수학급 근무 예정 합격자 限)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결격사유 조회용) ○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근무실적평가동의서(필요 시) ○ 가족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학교통합 지원과의 안내에 의함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붙임1)를 하나의 한글파일로 병합 또는 편집하여 제출, 파일명과 메일 제목명을 ‘문백초-특수-홍길동’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

8. 제출서류의 반환(파기)

- 가.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5항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 해당되어 반환의 의무는 없습니다.
- 나.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대상자 확정 후 14일 이내에 파기(삭제) 됩니다.

9. 유의 사항

- 가. 본 공고는 관내 일선 학교의 채용업무 경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과에서 기간제교원 채용 업무 일부를 위탁 진행하는 것이며, 채용권자는 응시자가 응시한 해당 학교의 학교장입니다.
 - 나.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다.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라. 응시인원과 무관하게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수업실연 동일)
 - 마.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각 단계에서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바. 본 계획은 학교 및 교육지원청 업무상황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사.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아. 서울교육일자리포털 內 「시간강사 인력풀」 등재 희망자는 [붙임2] 시간강사 인력풀 등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3] 시간강사 서약서, 교원 자격증 사본,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시간강사 인력풀 등재 희망은 응시자의 선택사항이며 교원 신규임용 예정자는 신규임용 예정교사 직무연수 이수증으로 교원자격증 사본과 최종학력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자. 기타 문의사항: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과: ☎ 02-2165-2153

- 붙임 1. 기간제교원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필수 제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지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선택 제출)
3. 시간강사 서약서 1부(선택 제출)
4. 시간강사 인력풀 모집 안내 1부(참고자료). 끝.